

수원-광명 고속도로 민 간 투 자 사 업
변 경 실 시 협 약



2010. 12. 31.



국 토 해 양 부
수도권서부고속도로(주)

제 00 제 총사업비의 변경

(1) 실시협약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.

| 당 초 | 변 경 |
|--|--|
| <p>총사업비는 <별표3>(총사업비 및 총 민간사업비)와 같이 2004년 6월 30일 불변가격 기준 금8,907.14억원으로, 총사업비에서 건설보조금 1,198.70억 원을 제외한 금7,708.44억원을 총민간 사업비로 하며, 이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보상비 등 금 291.22억원을 포함한 금액이다. 총사업비는 본 협약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할 수 없다.</p> | <p>총사업비는 <별표3>(총사업비 및 총 민간사업비)와 같이 2004년 6월 30일 불변가격 기준 금9,168.58억원으로, 총사업비에서 건설보조금 1,460.15억 원을 제외한 금7,708.44억원을 총민간 사업비로 하며, 이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보상비 등 금 291.22억원을 포함한 금액이다. 총사업비는 본 협약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할 수 없다.</p> |

(2) 실시협약 제13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.

| 당 초 | 변 경 |
|---|--|
| <p>⑥ 제1항에 의하여 총사업비가 변경되는 경우 협약당사자는 통행료 조정 또는 관리운영권설정기간 조정으로 해당 사유의 해소가 가능한지를 검토하고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협의에 의해 통행료를 조정하거나 관리운영권 설정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. 이 경우 총사업비의 변경에 대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제12자(분쟁의 해결)따라 해결한다</p> | <p>⑥ 제1항에 의하여 총사업비가 변경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건설보조금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. 다만, 이와 병행하여 협약 당사자는 통행료 조정 또는 관리운영권설정기간 조정으로 해당 사유의 해소가 가능한지를 검토하고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협의에 의해 통행료를 조정하거나 관리운영권 설정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. 이 경우 총사업비의 변경에 대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제12자(분쟁의 해결)따라 해결한다</p> |

(3) 실시협약 제51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.

| 당 초 | 변 경 |
|--|---|
| <p>① 본 사업시설에 포함하여 시행되는 지방도 309호선 봉담~금곡구간의 건설 및 운영을 위하여 주무관청이 총사업 비중 일부로서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할 건설보조금은 2004년 6월 30일 불변가 격 기준으로 <u>금1,198.70억원</u>으로 하되, 경상가격 기준으로 금1,600.00억원을 초과하지 못하며 건설보조금의 재원 및 지급일정은 <별표3-1>(건설보조금 재원 및 지급일정)과 같으며, 사업시행 자는 건설보조금 관리를 위한 관리계 좌를 별도 개설, 관리하고 사용할 때 는 주무관청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.</p> | <p>① 주무관청이 사업시행자에게 지급 할 건설보조금은 2004년 6월 30일 불 변가격 기준으로 <u>금1,460.15억원</u> 하며, 건설보조금 지급일정은 <별표3-1>(건 설보조금 지급일정)고 같으며, 사업시 행자는 건설보조금 관리를 위한 관리 계좌를 별도 개설, 관리하고 사용할 때는 주무관청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 다. 다만, 건설보조금 중 지방도 309호 선 봉담~금곡 구간의 건설 및 운영 을 위하여 지급하는 1,198.70억원 (2004.6.30 불변가)은 경상가격 기준으 로 1,600억원을 초과하지 못한다.</p> |

